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석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6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9월 2일

발 의 자 : 전석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임만균, 김소양, 박상구, 김재형,  
김제리, 이정인, 권순선, 최웅식,  
이광호, 서윤기, 이세열, 박기재,  
채유미, 이동현, 김태수, 노식래,  
김종무, 김동식, 장인홍, 김기대,  
의원(2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재 청년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‘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기존상업지역이 포함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상업기능을 발휘하는 상업지역의 면적을 축소시키게 됨.
- 이에 기존 상업지역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(신규 및 종상향 제외), 이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해당 조례에 덧붙으로써 자치구의 의사를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내에 기존의 상업지역이 포함되는 경우, 사업계획 결정절차 중에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단서내용 추가(안 제9조제3항)

#### 4. 기타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    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협의”를 “협의(다만 종상향 없이 기존상업지역 내에 사업대상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<u>협의</u>하여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제2항 각 호의 축진지구지정 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9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협의(다만 종상향 없</u> <u>이 기존 상업지역내에 사업대상지</u> <u>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</u> <u>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)</u> 하여야 하며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